

제137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 례 4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07 ~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 ~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7 ~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7 ~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	--------

제출연월일	2007. 4. .
제출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2006. 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2007. 1. 1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함에 따라,
- 수승대 관광지내 시설이용료(썰매장)의 징수기준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한 자구 수정(안 제4조)
 - 청소년, 군인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대학생·방위병 삭제), 어른 삭제
- 나. 썰매장 이용료 및 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별표 2, 별지 제4호서식)
 - 부가가치세 포함된 요금임을 표기
- 다.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를 낫표(「 」)를 사용하여 구분하게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 나. 예산조치 : 추경반영계획
(기 세입된 31,971천원에 대한 부가세 3,000천원)
- 다. 기 타
 -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입법예고 : 생략(상위법령의 단순 집행을 위한 사항임)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를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을 포함)을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입장·거절”을 “입장거절”로 하고, 동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2 시설이용료 중 나목 썰매장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썰매장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어린이	청소년·군인	어 른
개 인	4,000	5,000	6,000
단 체	3,000	4,000	5,000

※ 이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임.

별지 제4호서식 앞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썰 매 장 이 용 권

(앞면)

<p>썰매장 이용권 원본 일련번호 : 구 분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요금 : 원 (부가가치세 포함)</p> </div> <p>발 행 일 : 수승대관광지관리사무소</p>	<p>썰매장 이용권 회수권 일련번호 : 구 분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요금 : 원 (부가가치세 포함)</p> </div> <p>발 행 일 : 수승대관광지관리사무소</p>	<p>썰매장 이용권 영수증 일련번호 : 구 분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요금 : 원 (부가가치세 포함)</p> </div> <p>발 행 일 : 수승대관광지관리사무소</p>
---	--	--

°구분 : 어린이(개인, 단체), 청소년·군인(개인, 단체), 어른(개인, 단체)

°규격 : 180mm × 60mm(모조 100g/m²)

제1조 중 “관광진흥법”을 “ 「관광진흥법」 ”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6호 중 “장애인복지법”을 “ 「장애인복지법」 ”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하며, 제11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 「지방재정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 시설이용료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보호관리와 <u>관광진흥법 제64조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p> <p>2. 청소년 및 군인 :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학 포함)과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및 방위병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3. 어른 :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제2호 이외의 자</p> <p>4. 노인 : 65세 이상인 자</p> <p>5.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p> <p>제8조(관람료등의 면제)</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p> <p>1.~5. (생략)</p> <p>6.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장애인복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 소지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p> <p>②~③(생략)</p>	<p><u>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 ----- ----- ----- ----- ----- ----- ----- -----.</p> <p>제4조(정의) ----- -----.</p> <p>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p> <p>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p> <p>3.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을 포함)을 말한다.</p> <p>4.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p> <p>5.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p> <p>제8조(관람료등의 면제)</p> <p>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p> <p>1.~5. (현행과 같음)</p> <p>6. -----, 「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②~③(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제9조(입장거절 및 퇴장) --- 각호의 어느 하나----- ----- ----- ----- ----- ----- ----- -----		
제11조(위탁징수)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위탁징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에 붙일 수 있다. [별표 2] 시설이용료 가. (생략) 나. 썰매장 이용료		제11조(위탁징수) ①(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재정법」 ----- ----- [별표 2] 시설이용료 가. (현행과 같음) 나. 썰매장 이용료		
(단위:원)		(단위:원)		
구분	어린이	청소년·군인	어른	
개인	4,000	5,000	6,000	
단체	3,000	4,000	5,000	
다. (생략) (별지 제4호서식) 썰매장이용권 (앞면)		※이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임. 다.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서식) 썰매장이용권 (앞면)		
썰매장 이용권 원본	썰매장 이용권 환수권	썰매장 이용권 영수증		
일련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		
구분:	구분:	구분:		
요금:	요금:	요금:		
발행일	발행일	발행일		
수송대관광지 관리사무소	수송대관광지 관리사무소	수송대관광지 관리사무소		
。 구분:어린이(개인,단체), 청소년·군인(개인, 단체), 어른(개인,단체) 。 규격:180mm×60mm(모조 100g/㎡)		。 구분:어린이(개인,단체), 청소년·군인(개인, 단체), 어른(개인,단체) 。 규격:180mm×60mm(모조 100g/㎡)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	--------

제출연월일	2007. 4. .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 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대상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대상 사업자를 규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중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대상범위를 정함(안 제2조제2호)
 -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제외)
 -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22조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나. 기 타

(1)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입법예고(2007. 3. 26. ~ 4. 17.) 결과 : 의견제출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중 “거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를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u>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별표4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u></p>	<p><u>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u></p> <p>제2조(정의)</p> <p>.....</p> <p>1. (현행과 같음)</p> <p>2.</p> <p>.....「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폐기물관리법</u>(이하“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3조(적용범위) 「<u>폐기물관리법</u>」</p> <p>.....</p> <p>.....</p> <p>.....</p> <p>.....</p>
<p>제7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1. ~ 2. (생략)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u>각목의 1</u>에 해당하는 사유가</p> <p>.....</p> <p>.....</p>	<p>제7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1. ~ 2. (현행과 같음) 3.</p> <p>.....<u>각목의 어느 하나</u></p> <p>.....</p> <p>.....</p>
<p>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1.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기물 전용봉투는 <u>거창군폐기물관리</u>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 제작하여야 한다.</p>	<p>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1.</p> <p>..... 「<u>거창군 폐기물</u> 관리에 관한 조례」</p> <p>.....</p> <p>.....</p>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	--------

제출연월일	2007. 4. .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6. 5. 8, 2006. 8. 17 개정·공포되고,
-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 동 분류체계에 맞도록 용도변경 절차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 앞뒤 낫표(「)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함(안 제1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내지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2조, 안 제24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내지 안 제37조, 안 제42조 내지 안 제45조, 안 제48조, 안 제49조, 안 제51조, 안 제54조, 안 제57조, 안 제59조, 안 제61조, 안 제74조, 부칙 안 제 7조, 안 별표 1 내지 23)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
 -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안 제32조 내지 안 제37조, 안 제43조 안 제48조, 안 제49조, 안 제51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안 별표1 내지 별표2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7. 3. 21 ~ 4. 9)결과 : 의견제출 없음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거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거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영 제43조제1항제7호”를 “영 제43조제1항제8호”로 동조 제1호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조2호가목 및 나목단서 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5호가목 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5천”을 “1만”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1만”을 “1만5천”으로 한다.

제22조제3호 중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4조 중 “거창군건축조례”를 “「거창군 건축조례」”로 한다.

제28조제4호 중 “20퍼센트”를 “18도”로 한다.

제29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를 “「산지관리법」 제38조”로 한다.

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37조 및 제38 중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미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미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의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의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제1호 내지 제7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13”을 “17”로 하며, 동조제2호 중 “14”를 “18”로 하고, 동조제3호 중 “15”를 “19”로 하며, 동조제4호 중 “16”을 “20”으로 하고, 동조제5호 중 “17”을 “21”로 하며, 동조제6호 중 “18”을 “22”로 하고, 동조제7호 중 “20”을 “26”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의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0조 중 “각 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41조 중 “1500제곱미터”를 “1천5백 제곱미터”로 한다.

제42조 단서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중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7”을 “9”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중 “9”를 “13”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중 “12”를 “16”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 중 “13”을 “17”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 중 “14”를 “18”로 하며, 동조동항제7호 중 “15”를 “19”로 하고, 동조동항제8호 중 “16”을 “20”으로 하며, 동조동항제9호 중 “17”을 “21”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 중 “18”을 “22”로 하며, 동조동항제11호 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의 가목, 나목”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2호 중 “20”을 “26”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제1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장, 장의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다목, 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도소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도소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1조 중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를 “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을 “ 「건축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54조제3호 중 “자연공원법”을 “ 「자연공원법」 ”으로, 동조제4호 중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로, 동조제5호 중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57조 중 “농지법”을 “ 「농지법」 ”으로 한다.

제59조 중 “영 제85조제3항”을 “영 제85조5항”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며, 동조 제3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0조 제1항 중 “영 제85조제4항”을 “영 제85조6항”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1,000제곱미터”를 “1천 제곱미터”로 한다.

제61조 제1항 중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을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과”로 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74조 중 “거창군세부과징수규칙”을 “「거창군세 부과 징수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9조·제14조제·제15조·17조제2호가목 및 나목·제18조·제21조·제26조제1항·제27조·제44조제2항·제45조제4항·제54조·제56조·제59조 및 제60조제1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2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개별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 신고나 허가를 득하여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종전규정보다 불리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마목의 종교집회장(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타종시설 및 옥외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와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시장·상점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동호 가목의 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 다목, 라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의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 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형 공장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가목, 사목, 차목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동호 가목, 사목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7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과 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집회장·전시장, 동·식물원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가목중 정신병원·요양소 및 나목, 다목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 마목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가목(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가 세워진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단,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3 제9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사목, 차목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주기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와 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동호 다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다목(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사격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단,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3 제9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사목, 차목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주기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6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별표 3 제9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바목, 사목, 차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및 차고(주기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과 나목 중 인공수정센터·관리사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동호 가목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다목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0

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으로로서 별표 3 제9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으로
로서 별표 3 제9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나
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사목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바목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
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
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
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
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
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
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나
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사목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주기장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및 아
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사목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판매용 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3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라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가 주택과 기존주택의 기능회복을 위한 증·개축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라목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의 학교(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고물상을 제외한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원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6호 가목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 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유독물 보관·저장시설과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마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사목·아목·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중 중·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의 공장(동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6호 가목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 표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고물상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9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호 중 휴게음식점·제과점과 제4호 중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제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중 일반음식점(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목, 사목, 타목(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이상의 부지에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군수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과,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별표15 제6호의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 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다.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유독물 보관·저장시설과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마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목 중 종교집회장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3호 내지 제12호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료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및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3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건축물 시행령」 제3호 중 휴게음식점과 제4호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 별표18 제5호 및 별표19 제11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 · 구 대비표

현	개
행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p> <p>.....</p> <p>.....</p> <p>.....</p>
<p>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①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지방재정법</u> 및 <u>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u> · <u>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u> · <u>거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u>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 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p> <p>② (생 략)</p>	<p>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①</p> <p>.....</p> <p>..... 「<u>지방재정법</u>」 및 「<u>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u>」 · 「<u>거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u>」 · 「<u>거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u>」에 의한다.</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u>지방자치법</u>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p>	<p>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p> <p>..... 「<u>지방자치법</u>」</p> <p>.....</p> <p>.....</p>
<p>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①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법시행령</u>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u>건축법시행령</u>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 	<p>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법 시행령</u>」 2. 「<u>건축법 시행령</u>」

<p>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생 략)</p>	<p>..... 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 7. (생 략)</p>	<p>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8호의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2. ~ 7. (현행과 같음)</p>
<p>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생 략)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생 략)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생 략) 3. ~ 4. (생 략) 5. (생 략)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p>	<p>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현행과 같음) 1. 「건축법」 2. (현행과 같음) 가..... 「건축법 시행령」 나. 「건축법 시행령」 다.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 「사도법」</p>

<p>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 라. (생략) 6. (생략)</p>	<p>..... 나. ~ 라.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p>
<p>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생략)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p>	<p>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현행과 같음) 1.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5천 제곱미터 미만</p>
<p>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생략) 1. ~ 2. (생략)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u>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u> 규정을 준용하며 토로 가시권의 옹벽, 석축의 높이(노출부분)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6. (생략)</p>	<p>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규칙」 4. ~ 6. (현행과 같음)</p>
<p>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별표1 제2호라목(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u>거창군건축조례</u>에서 정한면적 이상으로 한다.</p>	<p>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거창군 건축조례」</p>
<p>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생략) 1. ~ 3. (생략) 4. 경사도 <u>20퍼센트</u>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p>	<p>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18도</u></p>
<p>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p>	<p>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p>

<p>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으로 한다.</p>	<p>..... 「지방공기업법」</p> <p>.....</p> <p>.....</p>
<p>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u>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u>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p>	<p>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p> <p>..... 「<u>산지관리법</u>」 제38조의.....</p> <p>.....</p> <p>.....</p>
<p>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법시행령</u>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u>건축법시행령</u>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u>건축법시행령</u>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u>건축법시행령</u> 별표1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 <신 설> 5. <u>건축법시행령</u>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u>건축법시행령</u>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u>건축법시행령</u>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u>건축법시행령</u>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u>건축법시행령</u>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u>건축법시행령</u>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u>건축법시행령</u>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u>건축법시행령</u>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 	<p>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법 시행령</u>」 2. 「<u>건축법 시행령</u>」 3. 「<u>건축법 시행령</u>」 4. 「<u>건축법 시행령</u>」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5. 「<u>건축법 시행령</u>」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u>건축법 시행령</u>」 제13호의 7. 「<u>건축법 시행령</u>」 제15호의 8. 「<u>건축법 시행령</u>」 제16호의 9. 「<u>건축법 시행령</u>」 제17호의 10. 「<u>건축법 시행령</u>」 제18호의 11. 「<u>건축법 시행령</u>」 제19호의 12. 「<u>건축법 시행령</u>」 제20호의 13. 「<u>건축법 시행령</u>」 제21호의

<p>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p>	<p>14. 「건축법 시행령」 제22호의 15. 「건축법 시행령」 제26호의</p>
<p>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시설</p>	<p>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건축법 시행령」 2.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 시행령」 4. 제7호의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p>
<p><신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p>	<p>6. 「건축법 시행령」 제13호의 7. 「건축법 시행령」 제15호의 8. 「건축법 시행령」 제16호의..... 9. 「건축법 시행령」 제17호의 10. 「건축법 시행령」 제18호의 11. 「건축법 시행령」 제19호의 ... 12. 「건축법 시행령」 제20호의</p>

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제21호의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제22호의

15. 「건축법 시행령」 제26호의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 략)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1. 「건축법 시행령」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7호의 판매시설
<신 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 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 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제13호의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제15호의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제16호의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제17호의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제18호의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제19호의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제20호의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p>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p> <p>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p> <p>1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p>	<p>15. 「건축법 시행령」 제21호의</p> <p>16. 「건축법 시행령」 제22호의</p> <p>17. 「건축법 시행령」 제26호의</p>
<p>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시설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 	<p>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2.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 시행령」 4. 「건축법 시행령」 제7호의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13호의 7. 「건축법 시행령」 제15호의 8. 「건축법 시행령」 제16호의 9. 「건축법 시행령」 제17호의 10. 「건축법 시행령」 제18호의 11. 「건축법 시행령」 제19호의 12. 「건축법 시행령」 제20호의 13. 「건축법 시행령」 제21호의 14. 「건축법 시행령」 제22호의..... 15. 「건축법 시행령」 제26호의

<p>관련시설</p> <p>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p>.....</p> <p>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제17호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8호의 3. 「건축법 시행령」 제19호의 4. 「건축법 시행령」 제20호의 5. 「건축법 시행령」 제21호의 6. 「건축법 시행령」 제22호의 7. 「건축법 시행령」 제26호의
<p>제37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시설 <신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 	<p>제37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2.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 시행령」 4. 「건축법 시행령」 제7호의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13호의 7. 「건축법 시행령」 제15호의 8. 「건축법 시행령」 제16호의 9. 「건축법 시행령」 제17호의..... 10. 「건축법 시행령」 제18호의

<p>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자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p>	<p>.....</p>
<p>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p>	<p>11. 「건축법 시행령」 제19호의</p>
<p>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p>	<p>12. 「건축법 시행령」 제20호의</p>
<p>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13. 「건축법 시행령」 제21호의</p>
<p>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p>	<p>14. 「건축법 시행령」 제22호의</p>
<p>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p>	<p>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u>각 호의 어느 하나와</u></p>
<p>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생략)</p>	<p>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규모) <u>1천5백</u>..... (현행과 같음)</p>
<p>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p>	<p>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p>

<p>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p>
<p>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생략)</p>	<p>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p>	<p>1. 「건축법 시행령」 2. 「건축법 시행령」 제9호의 3. 「건축법 시행령」 제13호의 4. 「건축법 시행령」 제16호의 5. 「건축법 시행령」 제17호의 6. 「건축법 시행령」 제18호의 7. 「건축법 시행령」 제19호의 8. 「건축법 시행령」 제20호의 9. 「건축법 시행령」 제21호의 10. 「건축법 시행령」 제22호의 11. 「건축법 시행령」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의 가목, 나목</p>
<p>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③ (생략)</p>	<p>12. 「건축법 시행령」 제26호의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건축후</p>	<p>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①..... 「건축법시행령」 ②</p>

<p>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u>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u>에 의한 공작물·담장·계장·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건축법시행령</u>」.....</p>
<p>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u>군사보호시설법 제10조의 규정</u>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생략)</p>	<p>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u>군사보호시설법</u>」..... 2. (현행과 같음)</p>
<p>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장, 장의사</u> 2.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다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라목 및 바목에 해당</u></p>	<p>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u>건축법시행령</u>」..... 2. 「<u>건축법시행령</u>」..... <u>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다목, 마목에 해당하는</u></p>
<p><u><신설></u></p>	<p>3. 「<u>건축법시행령</u>」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p>
<p>3.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u> <u><신설></u></p>	<p>4. 「<u>건축법시행령</u>」..... <u>제7호의 판매 시설</u> 5. 「<u>건축법시행령</u>」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p>
<p>4.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u></p>	<p>6. 「<u>건축법시행령</u>」..... <u>제9호의</u>.....</p>
<p>5.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u></p>	<p>7. 「<u>건축법시행령</u>」..... <u>제15호의</u>.....</p>
<p>6.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u></p>	<p>8. 「<u>건축법시행령</u>」..... <u>제16호의</u>.....</p>
<p>7.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u></p>	<p>.....</p>
<p>8.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u></p>	<p>.....</p>

설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시설	9. 「건축법 시행령」 제17호의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18호의.....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제19호의.....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제20호의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제21호의....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의 공공용 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14. 「건축법 시행령」 제22호의
가. ~ 나. (생 략)	15. 「건축법 시행령」 제23호의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의 묘지관련 시설	가. ~ 나.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제26호의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 략))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4. 「건축법 시행령」 제7호의 판매시설 중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제9호의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10호의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 설>	9. 「건축법 시행령」 제16호의

<p><신 설></p> <p>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p> <p>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p> <p>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p> <p>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p> <p>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차 세차장을 제외한다)</p> <p>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p> <p>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p> <p>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 나. (생략)</p> <p>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p>	<p>...</p> <p>10. 「건축법 시행령」 제17호의</p> <p>11. 「건축법 시행령」 제18호의</p> <p>12. 「건축법 시행령」 제19호의 ...</p> <p>13. 「건축법 시행령」 제20호의</p> <p>14. 「건축법 시행령」 제21호의</p> <p>15. 「건축법 시행령」 제22호의</p> <p>16. 「건축법 시행령」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17. 「건축법 시행령」 제26호의</p>
<p>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p> <p>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p> <p>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p> <p>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p>	<p>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p> <p>1. 「건축법 시행령」 ... 제15호의</p> <p>2. 「건축법 시행령」 ... 제16호의</p> <p>3. 「건축법 시행령」 ... 제19호의</p>
<p>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생략)</p> <p>1. ~ 2. (생략)</p> <p>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50퍼센트 이하</p>	<p>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자연공원법」</p>

<p>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p> <p>5. 공업지역안에 있는 <u>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u>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70퍼센트 이하</p>	<p>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p> <p>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p>
<p>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농지법」</p>
<p>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율)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지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u> : 80퍼센트 이하(다만, <u>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u>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u>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u>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p>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율) 영 제85조제5항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자연공원법</u>」 「<u>자연공원법</u>」 3.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u>」
<p>제60조(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p>	<p>제60조(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6항의</p>

<p>그 용적률을 <u>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u></p> <p>1. (생략)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u>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u></p>	<p>.....</p> <p>1. (현행과 같음) 2. <u>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u></p>
<p>제61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 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u>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u></p> <p>(이하 생략) ② (생략)</p>	<p>제61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 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위한 정비구역과.....</p> <p>.....</p> <p>(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7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p> <p>① <u>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u></p>	<p><삭 제></p>
<p>제74조(과태료 징수)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u>거창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u></p>	<p>제74조(과태료 징수) 「<u>거창군세부과 징수규칙</u>」</p>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

제출연월일	2007. 4. .
제 출 자	거창군수

<p>1. 개정이유</p> <p>「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및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전·평시 작전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함.</p>
<p>2. 주요내용</p> <p>가.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p> <p>나.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거창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3조제2항)</p> <p>다.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제6항)</p> <p>-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p>
<p>3. 참고사항</p> <p>가. 관계법규</p> <p>○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 제28조</p> <p>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p> <p>다. 기 타</p> <p>(1)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p> <p>(2)입법예고 결과 : 생략(상위법개정에 따른 단순 집행을 위한 사항임)</p>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통제구역 설정
5.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창소방서장
7.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군수, 읍·면장 소속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제4조제6항 중 “분야별 지원반장은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를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17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각목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u><신 설></u></p> <p>1.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p> <p style="padding-left: 2em;"><u><신 설></u></p> <p>2. 취약지역대비책</p> <p>3. 통제구역 설정</p> <p>4.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p>	<p>제2조(심의사항) ----- -----.</p> <p>1. 통합방위대비책</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u>운</u> <u>용</u> 및 지원대책</p> <p style="padding-left: 2em;"><u><삭 제></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3조(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생략)</p> <p>②협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p> <p>1.~5. (생략)</p> <p style="padding-left: 2em;"><u><신 설></u></p> <p>6. 기타 협회의의장이 위촉하는 자</p> <p>③(생략)</p>	<p>제3조(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현행과 같음)</p> <p>②----- -----.</p> <p>1.~5. (현행과 같음)</p> <p>6. 거창소방서장</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p> <p>①<u>군수 소속하에 군통합방위지원본부와 읍면통합 방위지원본부를 둔다.</u></p> <p>②(생략)</p> <p>③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p> <p>1.~6. (생략)</p> <p>④~⑤(생략)</p>	<p>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p> <p>①<u>군수, 읍·면장 소속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u></p> <p>②(현행과 같음)</p> <p>③----- -----.</p> <p>1.~6. (현행과 같음)</p> <p>④~⑤(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⑥분야별 지원반장은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p> <p>⑦(생 략)</p>	<p>⑥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 -----.</p> <p>⑦(현행과 같음)</p>
<p>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 가~바. (생 략)</p> <p>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u>각목1</u>에 해당하는 장애물 설치 가~나. (생 략)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p> <p>라. (생 략)</p>	<p>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5항----- ----- -----.</p> <p>1. (현행과 같음) 가~바. (현행과 같음)</p> <p>2. ----- 각 목의 어느 하나-----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p> <p>라. (현행과 같음)</p>